신용정보활용체제
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1조에 의거, 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○ 이용목적

-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보증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상담 등 사후관리
- 채권추심
- 마케팅(조합의 상품소개 및 판매)
- 기타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

○ 신용정보의 종류(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)

- 식별정보: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·E-mail), 개인식별번호(주민등록 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국내거소신고번호), 성별,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(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)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, 법인등록번호·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, 본점·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, 설립연월일, 종목, 대표자의 성명·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
- 신용거래정보 : 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, 신용카드, 할부금융, 시설대여와 금융 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
- 신용도판단정보 :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대지급과 거짓, 속임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·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,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
 - 가. 「국세기본법」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 출자자인 자
 - 나. 「국세기본법」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 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
 - 다.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
 - 라.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
- 신용능력정보 :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
 - 가. 개인의 직업·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
 - 나. 기업 및 법인의 연혁·목적·영업실태·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

개황(槪況),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, 판매명세·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사업의 내용,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)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(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)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

- 공공정보: 국세·지방세·관세·과태료·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공공기관이 법에 의해 제공하는 정보(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한다)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○ 제공대상자

-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, 공제사업제휴 손해보험회사,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○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- 보험·공제 가입, 청구 및 공제계약 관리
- 기타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

○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식별정보, 신용거래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능력정보
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○ 보유 및 이용기간

- 조합과의 업무거래 관계 및 법적효력 만료 후 5년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까지

○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전자적 파일 형태의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
- ※ 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요구하는 위험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이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는 상기의 보유 및 이용기간, 파기절차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4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위탁내용	수탁자
보험·공제 및 사후관리	조합과 협약한 보험회사
 채권추심	조합과 협약한 신용정보회사
법적조치 수행	조합과 협약한 법무법인, 번호사, 법무사

5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

○ 본인신용정보 제공·열람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음

○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

○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 할 수 있음

○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자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

○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, 연락중지 요청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· 이용에 대한 동의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 할 수 있음

6. 신용정보 관리·보호 담당자

○ 신용정보 관리·보호인 : 공제사업본부장

○ 신용정보 관리 : 공제사업본부 신용관리팀

○ 전화번호 : 02-2141-7845